

**한국의료질향상학회 임원의규정 개정안 비교**

	현 규정	개정 규정	비고
1. 임원의 구성	1) 회칙 제10조 (임원)에 의거하여 회장, 부회장, 이사(회장과 부회장 전원을 포함하여 40인 내외) 및 감사 2인으로 구성. 2) 이사의 구성 - 집행이사 : 총무이사, 학술이사, 편집이사, 교육연수이사, 대외정책홍보이사, 간행이사 - 이사 3) 직역단체 부회장 및 이사의 정의 - 직역단체는 학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병원협회, 대한간호협회, 한국QI간호사회,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, 대한의무기록협회, 국군의무사령부, 의료기관평가인증원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한국보건의료연구원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포함한다. - 직역단체의 부회장 및 이사는 개인이 아닌 기관의 대표로서 참석하므로 해당 단체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대체 인력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- 해당 단체는 소속회원 중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이사로서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임원을 선정하여 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- 해당 단체는 초기 참회시에는 이사로 선정되며 학회 내 다른 임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학회 활동을 고려하여 부회장으로 추천될 수 있다. - 해당 단체는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연회비가 납부되어야 부회장 및 이사로 최종 임명된다. 4) 직역단체는 학회의 필요 혹은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.	1) 회칙 제10조 (임원)에 의거하여 회장, 부회장, 이사(회장과 부회장 전원을 포함하여 50인 내외) 및 감사 2인으로 구성.  좌동  좌동  좌동	회칙 개정에 따라
2. 임원의 임기	1) 회칙 제11조 (임원의 임기)에 의거하여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	회칙 개정에 따라 개정 예정	
3. 임원의 의무 및 역할	1) 회칙 제12조 (임원의 임무)에 의거하여 결정 - 회장 :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,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된다. -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는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- 집행이사 : 본 학회의 이사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 - 이사, 직역단체이사 :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 - 감사 : 본 학회의 업무와 회계,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,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2) 임원은 임기 중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학회의 모임에 최소 1회 이상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임이 불가할 수 있다.	1) 회칙 제12조 (임원의 임무)에 의거하여 결정 - 회장 :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,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된다. -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는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- 집행이사 : 학회의 이사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 - 이사, 직역단체이사 :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 - 감사 : 학회의 업무와 회계,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,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 좌동	

	현 규정	개정 규정	비고	
4. 임원의 선출	1) 회칙 제13조 (임원의 선출)에 의거하여 -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-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되,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.	1) 회칙 제13조 (임원의 선출)에 의거하여 - 차기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- <b>감사는 전임 총무이사 중에서 선출하되,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임 집행이사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.</b>	차기 회장과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	
	2) 이사회 춘·추계 학술대회에 연 2회 개최하고 총회는 가을 학술대회에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	2) 정기이사회와 총회는 봄·가을 학술대회 기간에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		원래 회칙에 따라 수정
	2) 임원 중 부회장은 임원의 한도 (40명 내외)에서 구성하되, 최소한 2년 이상 연임한 이사 중에서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집행이사들의 동의하에 회장이 임명한다.	삭제		규정 수정에 따라 삭제
5. 임원의 연회비 납 부 의무	1)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임명서에 대한 동의 사인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최종적으로 임원으로 선정한다.	1) 임원으로 <b>추천</b> 된 경우 <b>추천</b> 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및 연회비를 납부한 <b>사람</b> 을 임원으로 위촉한다.		
	2) 임원 연회비 - 회장, 부회장, 집행이사, 이사 : 10만원 / 1년	좌동		
6. 임원의 혜택	1) 학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소정의 회의료를 지급한다. 단,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근무하는 경우 1일 교통비를 실비로 추가 지급한다.	좌동		
	2) 지방에서 개최되는 가을학회에 참석하는 경우 - 학회 준비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: 숙박비 지원, 학회등록비 면제 - 학회 단순 참가하는 경우 : 학회등록비 면제 (단, 참석 여부를 미리 연락하는 경우)	2) 지방에서 개최되는 <b>학술대회</b> 에 참석하는 경우 - <b>학술대회</b> 준비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: 숙박비 지원, 학회등록비 면제 - <b>학술대회</b> 단순 참가하는 경우 : <b>학술대회</b> 등록비 면제 (단, 참석 여부를 미리 연락하는 경우)		
	3) 임원들이 요청한 경우 회장 이하 집행이사진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혜택을 추가할 수 있다.	3) 임원들이 요청한 경우 회장 <b>또는 집행이사회의</b> 의결에 따라 임원의 혜택을 추가할 수 있다.		